



과업지시서

- 동국대학교 연구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

2020. 08

동 국 대 학 교
관리처 시설팀

1. 용역개요 : 동국대학교 연구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관련 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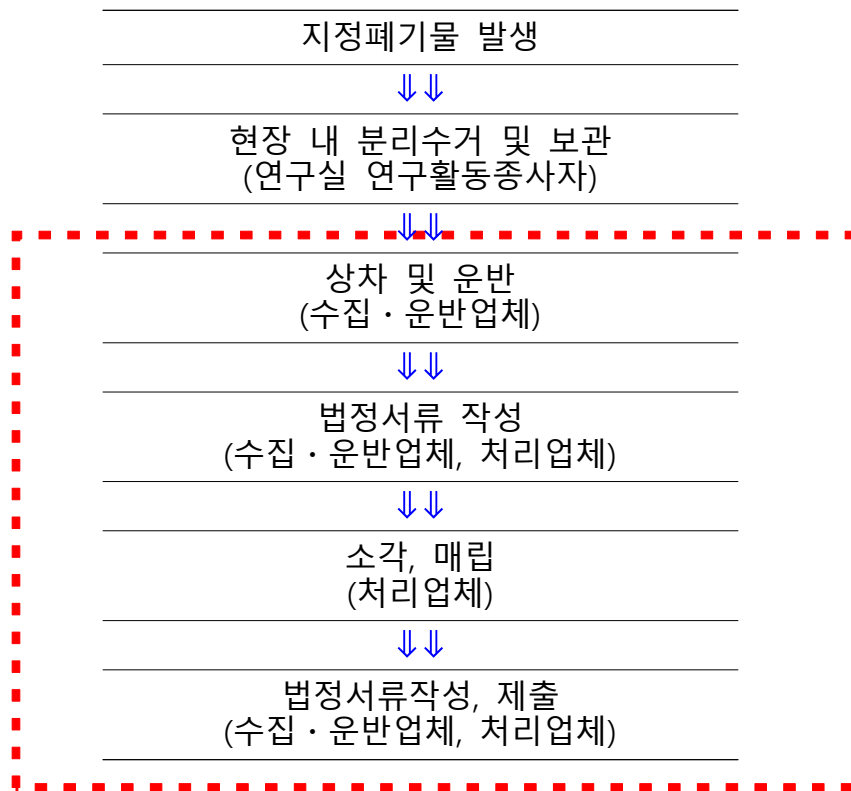
가. 「폐기물관리법」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폐기물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3. 용역기간 : 계약일 기준으로부터 2년(24개월)

4. 용역의 범위



※ 상기 지정폐기물 배출을 위한 소모품(카톤박스, 폐수통) 납품 포함 사항임.

5. 지정 폐기물 규격서

- 가. 발생원 : 학부 실험·실습 수업 및 연구과제에 의한 연구활동
- 나. 구분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 관련 지정폐기물
- 다. 폐기물종류 : 폐산, 폐알칼리, 기타폐유기용제(고상), 기타폐유기용제(액상), 할로겐족유기용제, 연구·검사용폐시약(폐유독물)

6.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

- 가. 서울캠퍼스 : 원흥관, 과학관, 정보문화관 P동, Q동 등 학교 지정장소
- 나. 고양캠퍼스 : 약학관, 상영바이오관 등 학교 지정장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특기사항

1. 업체선정조건

가. 한강유역환경청 지정폐기물 처리업 등록업체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보유한 업체 [단, 지정폐기물인 폐유(고상)에 대한 수집운반 및 중간처분이 가능함이 확인되어야 함]

1.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한 업체 (수집·운반능력 보유)
2.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3.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 (수집·운반능력 보유)
4.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과 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소각전문)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과 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 (1) 1~4호 각각 면허를 가진 업체가 2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가능
(2) 입찰참가자격 관련 제출 서류 : 해당 폐기물 허가증

다. 동국대학교에서 배출되는 항목(구·검사용 폐시약(폐유독물), 그 밖의 폐유기용제, 그 밖의 폐산, 그 밖의 폐알칼리, 할로겐족 폐유기용제)을 수집 운반 처리가 가능한 업체

2. 업무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발주자의 위탁폐기물에 대한 상·하차,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로 한다.

나. 사업장폐기물 처리 시 운반차량의 상차업무는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저장창고에서 운반하는 모든 제반사항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각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제출 서류 누락으로 발생하는 제반사항의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폐기물처리업	제 출 서 류
수집·운반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 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시설보유현황 사본 1부
처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폐기물 종합처분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허가증 사본 1부 (해당분야)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증빙서류 사본 1부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시설보유현황 사본 1부

라. 지정폐기물 예상발생량, 처리방법, 소모품 사용량

- 1) 대상폐기물 : 그 밖의 폐산, 그 밖의 폐알칼리, 그 밖의 폐유기용제(액상, 고상), 연구·검사용 폐시약(폐유독물)
- 2) 지정폐기물 배출처리량 및 소모품 사용량(18.9~20.7)

NO	지정폐기물 및 소모품 종류	상태	처리 방법	단위	배출량(18.9~20.7)		
					서울 캠퍼스	고양 캠퍼스	합계
1	폐산(01-01-99)	액상	중화	Kg	3,540	1,560	5,100
2	폐알칼리(02-02-99)	액상	중화	Kg	1,980	1,240	3,220
3	그밖에 폐유기용제(04-02-00)	고상	일반소각	Kg	18,320	13,260	31,580
4	그밖에 폐유기용제(04-02-00)	액상	일반소각	Kg	2,860	9,590	12,450
5	할로겐족(04-01-00)	액상	고온소각	Kg	9,410	16,910	26,320
6	폐유독물(09-02-00)	고상	고온소각	Kg	1,880	-	1,880
7	폐기물상자	-	-	EA	3,000	-	3,000
8	플라스틱용기	-	-	EA	600	-	600

※ 상기 사항은 최근 2년간 배출 및 사용량이며, 2020년 이후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 활용 바람.

마. 소모품 규격

품 목	규 격	재 질	비 고
폐기물상자(카톤박스)	400*400*300	종이	B골
폐수통	20L	고밀도폴리에틸렌 [HDPE]	열림방지장치, 가스배출구

3. 상차작업 및 계량

가. 작업기한은 작업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로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이를 배제한다.

- 기간 내 처리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2일전까지 발주자에게 통보

나. 상차, 계량, 운반 등의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모든 폐기물처리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공차 중량을 뺀 실 중량으로 한다.

라. 사업장폐기물 처리량은 중간처리업체 또는 최종매립지 또는 공인 계량증명소에서 발행하는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마. 폐기물 계량증명서는 운반 차량별 2부를 발행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1부씩 보관한다.

4. 폐기물의 운반

가. 수집·운반, 처리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환경오염 등의 기타 일체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진다.

나. 수집·운반차량은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차량이어야 하고,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을 수 없다.

다. 폐기물의 운반장소는 위탁처리 계약서에 명시한 장소 외에는 운반 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 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수집·운반 시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5. 폐기물 처리

가.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된 폐기물처리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

- 나. 폐기물처리업체는 인·허가된 보관창고의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받지 않은 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
- 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없다.
- 라. 허가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다.
- 마.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기타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비용지급

- 대금요청·지불은 처리한 폐기물 전량으로 하고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 (Allbaro)에 등록된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다.

7. 계약해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명시된 계약해지 조항 외에 다음의 경우에도 발주자는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 귀속된다.

1.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한 처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 휴업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반출 및 처리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2. 기타 발주자의 사유(부도, 영업정지 등)로 계속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3.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 변경, 정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폐기물처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5ton 이하 등의 차량보유에 대한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배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폐기물 반출관련 배차신청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작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미 처리시
(단, 천재지변 및 국책상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요인이 발생할 경우는 예외)

8. 용역변경사항

- 가. 관련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해 관련 용역에 대한 수행이 불필요할 때
- 나. 폐기물 분류(일반, 지정)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수행목적상 추가역무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사항 중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상호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항은 제외)

라. 설계변경에 대한 제반업무는 발주자의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진행한다.

9. 업무협조

- ①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세우고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합의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